

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3년 6월 4일
- 나. 제출자 : 목포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3년 6월 4일
- 라. 상정일자 : 2003년 6월 13일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

- 제22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: 총무국장 정 하 택

나. 개정이유

- 호남권의 서남해양 문화관광벨트 거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광개발 기반사업 추진기구를 보강하고,
- 선진 자치행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동 기능전환 업무를 총괄하는 한시기구 재조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제2조 제목과 동조 제1항중 “실장·”을 삭제(안 제2조)
- 제3조 “기획실”을 “기획관광국”으로 하여 총무국 다음에 둔다. (안 제3조)
- 제4조의 제목중 “기획실에 두는 담당관”을 “기획관광국에 두는 과”로 하며,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(안 제5조제1항)
 - ① 기획관광국에 기획예산과, 관광과, 문예홍보과를 둔다.
- 제4조 제2항중 “기획실장”을 “기획관광국장”으로 하며, 동조 동항 제10호 “전산·통계”를 “전산”으로, 제23호를 삭제하고, 제35호 내지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(안 제5조제2항)
 - 35. 관광개발 관련 민·외자 유치사업 추진
 - 36. 관광이벤트사업의 발굴 및 육성
 - 37. 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 추진
-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① 총무국에 총무과, 세정과, 회계과, 민원봉사과, 주민자치과를 둔다.
(안 제4조제1항)
- 제5조 제2항중 제48호 내지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(안 제4조제2항)
 - 48. 동 기능전환 추진상황 전반관리

49. 주민자치센터 행·재정적 지원

50.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

제4조를 제5조로 하고, 제5조를 제4조로 한다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4. 위원회 활동

○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(2003. 6. 13)

·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답변, 안건검토 및 심사결정

5. 토론요지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개발 기반사업을 추진할 관광분야의 기능보강과 한시기구로 설치된 징수업무부서를 2002년 12월 4일 시달된 「한시기구 등 설치 및 운영지침」에 의거 주민자치과로 전환하게 됨에 따른 기구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의 건으로

○ 기획관광국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수석국을 바꾼 것은 무리한 변경이었으며, 세무과와 징수과가 세정과로 통합되어 업무과다가 예상되고, 도시건설국 중 하수과를 상수도사업소와 하나로 묶는 통합관리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. 또한 행정 수요의 증가를 잘 파악하여 인원 및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람.

○ 향후 조직개편시에는 시청 전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 바람.

6. 심사결과

【수정가결】

현 행	개 정	수 정 안
(없음)	(없음)	부 칙(신 설) ③(한시기구의 존속시한) 제5조 제1항에 의한 주민자치과의 존속시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